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